

대구예술대학교 계약직원 인사규정

(제정 2019.07.26. 법인이사회)

(개정 2023.01.25. 교무위원회)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) 계약직원의 채용조건, 채용 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① 이 규정에서 계약직원이라 함은 채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와 채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

② ‘기간제 계약직’이라 함은 채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

③ ‘무기계약직’이라 함은 채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의 계약직원은 우리 대학교 본부와 학부 및 전공, 부속기관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.(개정 2023.01.25.)

제4조(계약직원의 구분) 계약직원은 직무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일반행정계약직 : 본부 부서 및 부속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한 자
2. 학부·전공행정계약직 : 학부 및 전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한 자.
3. 기타계약직 : 위 항에서 표시하지 않은 업무를 위해 임용한 자.

제5조 (임용) ① 제4조 1호의 계약직원의 임용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

② 제4조 2,3호의 계약직원의 임용은 총장이 채용한다.

제6조 (정원)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 (임용결격사유) 우리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4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

제8조 (임용절차) ① 제4조 1호의 계약직원의 임용은 “직원인사위원회”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서는 공개채용을 실시할 수도 있다.

② 제4조 2, 3호의 계약직원의 임용은 부서장 또는 학부장 및 전공주임의 추천에 의하여 임용한다. (개정 2023.01.25.)

제9조 (자격) 계약직원은 업무에 맞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채용계약) ① 계약직원의 채용계약은 근로계약서에 의하며 총장이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② 계약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,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속 근로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③ 계약직원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총장에게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재계약) ① 기간제 계약직원의 경우 근무성적 평정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1년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.

② 근무성적 평정결과 재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해 계약직원은 당연 퇴직한다.

제12조 (구비서류) ① 일반행정계약직원은 최초 계약 시 정규직원에게 준하는 구비서류를

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학부·전공행정계약직원 및 기타계약직원은 최초 계약 시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23.01.25.)

1. 추천서 1부. - 재계약시는 당해 서류만 제출한다.
2. 이력서 1부.
3. 최종학력증명서 1부.
4. 주민등록등본 1부.
5.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.
6. 기타 우리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

제13조 (근무실적평가) ① 채용된 계약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계약의 변경, 연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한다.

② 근무실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구예술대학교 계약직원 평정규정에 따른다.

제14조 (계약해지) 채용권자는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직원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 된 때
2. 신체·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
3. 계약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한 때
4. 직제,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경우
5. 천재지변 또는 전시,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
6.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
7.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
8. 제7조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
(다만,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)
9. 기타 채용계약상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

제15조 (신분의 보장) ① 계약직원의 신분은 직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

제16조 (직급의 부여) 임용권자는 계약직원의 경력,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급(직위)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17조 (보수) 계약직원에 대하여 보수는 별도로 정하며, 우리 대학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.

제18조 (복무) 계약직원에 대한 복무사항은 우리 대학교 교직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.

제19조 (징계) 학교법인 세기학원 직원징계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0조(기타)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제 규정 및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“계약직원 임용규정” 과 “조교 임용에 관한규정”을 폐지하며, 재직 중인 계약직원, 조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